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12. 17(수) 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12. 09.

나. 제 안 자 : 허 준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4. 12. 09.

라. **상정일자** : 2014. 12. 17.(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)

O 제안설명 : 허 준 의원

O 검토보고: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O 질의 및 토론

O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O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, 유 족과 가족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4조)

-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·운영토록 노력할 시 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
-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과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지원 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 산에 계상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
- O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 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"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 위원회"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순직 소방공무원등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- O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(안 제10조)
-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고,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·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둠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2011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동일 제명의 「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(조례 제5010-9호)」를 제정하였지만 "위 로금 지급"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 사항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실효된 상황임.

- 이후, 2014년 6월 개정된 「소방공무원법」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으며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제정안을 마련 하였음.
-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소방공무원 유족,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,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"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"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자녀장학금, 단체보험, 취·창업 우대 등 지원방안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.
- 다만,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효된 기존의 「인천광역시 공사 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(조례 제5010-9호)」는 본 제정 조례 안과 제명이 동일하고 내용이 유사하므로 부칙에 폐지하는 규정을 두어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〈 이영훈 위원 〉

○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효된 기존의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맞는가?→ 폐지가 맞음. 입법되어 특별위로금 지급 사항은 법에 규정 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차준택, 허 준, 신영은, 이영훈, 이용범 위원

6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 (재석위원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- ❖ 수정가결 내용
- 부칙에서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"를 "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"로 하고
 - "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(조례 제5010-9호)는 폐지한다."로 수정

7. 소수의견 요지

O 없음

8. 기타 사항

O 특이사항 없음

□ 붙 임

- 1.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- 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- 3.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.

안 부칙에서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"를 "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"로 하고,

"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(조례 제5010-9호)는 폐지한다.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 ~ 제12조 < 생 략 >	제1조 ~ 제12조 〈제정안과 같음〉
제1조 ~ 제12조 〈 생 략 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(조례 제5010-9호)는 폐지한다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순직소방공무원"이란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,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·훈련 중 사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.
 - 2. "공상소방공무원"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9조 및 제30조에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.
 - 3. "공사상 소방공무원"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 "순직소방공무원"과 "공상소방공무원"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 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)
 - 2. 자녀
 - 3. 부모
 -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
 -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호의 수위로 한다.

- 제5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 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의료기관중에서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·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.
- 제6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,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 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
 - 2.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
 - 3.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
 - 4.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 정을 위한 지원시책
 - 5.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
 - 5.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7조(재원의 부담 및 확보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제8조(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"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"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 - 1.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
 - 2.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당연직위원으로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 - 2.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3. 병원장 및 대학교수
 - 4.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9조(자녀장학금 지원) ①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, 지원 규모, 신청 등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0조(단체보험 지원) ①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(취·창업 우대 등)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 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·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,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(조례 제5010-9호)는 폐지한다.